

장학금 지급 규정

2002. 11. 16 제정
2017. 2.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통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3조(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매년도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장학심의위원회)

1.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며 위원장과 심의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장학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
 - 2) 장학생 에세이 선발대회 심사
 -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선정대상)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학중인 해당 대학의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교통에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2. 교통관련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3. 장학생 에세이 선발대회 수상자
4. 기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기간 중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첨 양식)
2. 전(前)년도 성적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3. 기타 장학심의위원회의 요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하며 매 학기초 해당 대학의 등록기간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가 허위인 경우나 제출한 에세이의 독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2. 학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3. 장학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9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장학금이 있을 경우 그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